# 2011년 해양경찰 형법기출 [윤황채교수]

1. 다음 사례 중 甲이 '흥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전처인 乙에게 재결합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내면서 청산염 2g 정도를 동봉·우송하여 乙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甲은 깨어지지 아니한 맥주병으로 乙의 등을 폭행하였다.
- © 甲은 친구인 乙·丙과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乙·丙은 건물로부터 약 30 내지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차 안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망을 보고 있었다.
- ② 甲은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乙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입혔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4) 47H

### [정답] ②

- [해설] ② '홍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경우는 ①②의 2개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u>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u>.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5.30. 97도 597).
- ① X.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하므로 <u>청산염 2g램 정도를 협박 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10.8. 85도1851).</u>
- © O. 깨진 맥주병, 항아리조각, 부러뜨린 걸레자루 등은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6.12. 90도859).
- © X.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4.10.11. 94도1991).
- ② O. 깨어진 유리조각은 위험한 물건이다.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396쪽

### 2. 형의 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형의 집행유예
- ② 가석방
-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주한 기간
- ④ 천재지변으로 집행할 수 없는 기간

### [정답] ③

- [해설] ③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주한 기간은 형의 시효의 정지사유가 아니다. ①②④ 제79조 (시효의 정지) 시효는 형의 <u>집행의 유예</u>나 <u>정</u> <u>지</u> 또는 <u>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u>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377쪽
- 3. 다음 중 甲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 인가?(관례에 의함)

- ① 甲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단 횡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고, 쓰러진 무단 횡단자는 지나가 던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
- ① 담임교사 甲은 학생들의 유리창 청소시에 교실 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 닦도록 지시하였으나, 한 학생이 이러한 담임교사의 주의를 무시 하고 종례 후 유리창 바깥쪽을 닦으려고 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크 게 다쳤다.
- © 교사 甲은 징계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 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 실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② 의사 甲은 간호사에게 수혈을 맡겼는데 그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 ④ 47H

#### [정답] ②

[해설] ②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는 □②의 2개이다.

- ⊙ O.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상에 전도케 하고, 그로부터 약 40초 내지 60초 후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타이탄트럭이 도로위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전방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의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40초 내지 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0.5.22. 90도580).
- © X.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왔고 유리 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안쪽에서 닦을 수 있는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 시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이 수업시간이 끝나자마자 베란다로 넘어 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u>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u> 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9.3.28. 89도108).
- © X. 교사가 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어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 정계당하는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이 정계 당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려 뒤에서 다가선다던가 <u>옆자리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u> 교사가 교육의 목적으로 학생을 정계하기 위하여 매질하는 경우에 반드시 한 사람씩 불러내어서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위 교사의 행위를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문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7.9. 84도822).
- ② O. 수혈은 종종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이므로, 수혈 을 담당하는 의사는 혈액형의 일치 여부는 물론 수혈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혈 도중에도 세심하게 환자의 반응을 주시하여 부작용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환자의 전적인 신뢰하에 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그 의 료행위를 시술하는 기회에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있고,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 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의사는 당해 의료행 위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칠 위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하 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을 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간호사를 신뢰하 여 간호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자 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는 그에 대한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 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인턴의 수가 부족하여 수혈의 경 우 두 번째 이후의 혈액봉지는 인턴 대신 간호사가 교체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 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 봉지의 교체를 일임한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 <u>될 수는 없다</u>(대법원 1998.2.27. 97도2812).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9쪽
- 4. 종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간첩이 무전기를 매몰하는 데 망을 보아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구를 비치하고 고객들이 이를 통해 얻은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 줌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위 사행행위 영업 등에 관한 방조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간호보조원의 무면허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의사가 이를 진료부에 기재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후행위가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다.
- ④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그 행위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아니 하고 방조범으로 인정되나, 적어도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는지 는 알아야 한다.

#### [정답] ④

- [해설] ④ 외국상품을 수입 통관함에 있어 자기명의로 외국물품을 수입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면 그 명의로 영업세 및 소득세의원천정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외국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실수요자들의 상품판매에 따른 영업세 및 소득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실수요자들의 영업세등을 포탈하도록 한 방조범이 성립된다. 정법이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9.28. 76도4133).
- ①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그의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거나 하는 사실만으로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6.2.25. 85도2533).
- ②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장에 사행성유기기구를 비치하고 고객들이 이를 통해 얻은 경품용 상품권을 환전해 줌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 <u>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위 사행행위 영업 등에 관한 방조범의 책임을 인정</u>한다(대법원 2007.10.26. 2007도4702).
- ③ 진료부는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에 참고로 공하여지는 진료상황부이므로 간호보조원의 무면허 진료행위가 있은 후에 이를 의사가 진료부에다 기재하는 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종료 후의 단순한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2.4.27. 82도122).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90쪽

### 5.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가장 타당하지 <u>않은</u>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성교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16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
- ©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부분을 촬영한 경우는 무죄이다.
- ②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 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① 1개 ② 2개 (

③ 3개

④ 4개

[정답] ④

[해설] ④ 판례에서 틀린 것은 ⑦CC로의 4개이다.

① X.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

- 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5704).
- X.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교의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청소년이 이에 속아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에 관하여는 그러한 금품의 제공과 성교행위 사이에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청소년이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12.24. 2001도5074).
- © X. 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그 촬영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법원 2008.9.25. 2008도7007).
- ② X.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남편이 처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교행위를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대법원 2009.2.12. 2008도 8601).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432쪽

# 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Z에게 丙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도록 교사하였으나, Z이 방화는 하지 않고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  $\cdot$  음모 죄로 처벌된다.
- ② 甲과 乙은 강도를 공모하고 丙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丙을 강간하였고, 乙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경우, 甲은 강도강간죄, 乙은 특수강도죄로 처벌된다.
- ③ 甲과 乙이 과도를 들고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대문 밖에서 망을 보고 乙은 공모한 대로 丙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甲은 상해를 가할 것까지는 공모하지 않았을 경우, 甲은 특수강도죄로 처벌된다.
- ④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하고, 乙은 현장에서 망을 보기로 하였다. 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乙은 공포심을 느껴 도망하고 말았다. 甲은 그 후 丙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그를 때려 상처를 입혔으나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는 못한 경우, 甲은 강도상해죄, 乙은 특수절도죄의 미수로 처벌된다.

### [정답] ③

- [해설] ③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 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면 대문 밖에서 망을 본 공범인 피 고인이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 고인은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4.14. 98도356).
- ① 교사의 착오로서 <u>추상적 사실의 착오이며 질적 착오</u>이다. 원래 질적 착오는 불가벌이나 교사자는 기도된 교사(효과없는 교사)로서 예비음 모로 처벌되므로 방화예비음모로 처벌된다.
- ②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의 강간사실을 알게 된 것은 <u>이미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었음이 명백하고</u> 강간사실을 알고나서도 암묵리에 그것을 용인하여 그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할 의사로 강간의 실행범인 원심공동피고인 B와 강간 피해자의 머리 등을 잡아준 원심공동피고인 C와 함께 일체가 되어 원심공동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

- 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국 강도강간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제1심판결이 밝힌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미 위에서 옮긴 대로인 바 그에 의하더라도 공모자들이 무엇을 하기로 공모 또는 모의한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아니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남겼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9.13, 88도1114).
- ④ 빈담배가게사건이다. 절도를 공모한 피고인이 다른 공모자 甲의 폭행행위에 대하여 사전양해나 의사의 연락이 전혀 없었고, 범행장소가 빈 가게로 알고 있었고, 위 甲이 담배창구를 통하여 가게에 들어가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던중 예기치 않았던 인기적소리가 나므로 도주해버린 이후에 위 甲이 창구에 몸이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피고인은 그동안 상당한거리를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하에서는 피고인이 위 甲의폭행행위를 전연 예기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에게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대법원 1984.2.28. 83도3321).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63쪽

# 7. 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동네 아주머니와 시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자고 아침에 돌아온다"고 말한 경우
- ① 피고인이 수사경찰의 고문을 받았다고 4인에게 순차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 © 피고인이 식당 내의 방안에서 피해자의 친척 한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불륜사실에 관한 말을 한 경우
- ② 중학교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 발을 일삼는 악덕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 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정답] ②

[해설] ②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의 2개이다.

- ① O. 피고인이 공소외 (甲)의 집앞에서 공소외 (乙) 및 피해자의 시어머니(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말의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3.10.11. 83도2222).
- © O.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12.10. 84도2380).
- © X. 피고인이 식당 방안에서 B의 한 사람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행위는 그 상대방인 B와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로 보아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10.27. 81도1023).
- ② X. 중학교 교사에 대해 "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 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등에 비추어 볼때 위 이사장이 <u>위 진정서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므로</u>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3.10.25. 83도2190).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452쪽

### 8. 예비, 음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u>않은</u> 것 은?(판례에 의함)

①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 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졌거나를 막론하고 또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1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할 수 없다
- ②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 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법률에 예비, 음모와 미수는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는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지 본범에 준하여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④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죄에 흡수되어 위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정답] ③

- [해설] ③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이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u>최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u>(대법원 1977.6.28. 77도251).
- □ 형법 제28조에 의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 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는 원칙으로 벌하지 아니한 이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때 다시 말하면 음모 또는 예비를 처벌한다는 취지와 그 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때에 한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제5조 4항에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예비, 음모는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법 제5조 4항의 입법취지가 동법 제5조 1항의 예비, 음모죄를 처벌한 의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 음모의 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본범이나 미수범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석함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6.28.77도251).
- ① 살해의 목적으로 동일인에게 일시 장소를 달리하고 수차에 걸쳐 단순한 예비행위를 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다가 드디어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 그 예비행위 내지 공격행위가 동일한 의사발동에서 나왔고 그 사이에 범의의 갱신이 없는 한 각 행위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서 행하여 졌거나를 막론하고 또 그 방법이 동일하거나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살해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의 행위는 모두 실행행위의 일부로서 이를 포괄적으로 보고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죄로 처단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65.9.28. 65도695).
- ②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4.9. 99도424).
-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상습강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강도의 목적으로 강도예비를 하 였다가 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강도예비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강 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u>강도예비행위는 상습강도</u> <u>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강도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u> 이 상습강도죄와 별개로 강도예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3.28, 2003도665).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44쪽

### 9. 다음 중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소유자가 섬을 떠난 후 그대로 버려둔 채 10년 이상 관리하지 않은 물건
-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어음
- ⓒ 금제품인 대마(大魔)

- ② 평소 행위자가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관계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②

[해설] ② 절도죄의 행위객체에 해당하는 것은 ⓒⓒ의 2개이다.

- ① X.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지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에 옮겨놓았다 하더라도, 그 물건들의 반입 경위,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나게 된 경위, 그 물건들을 옮긴 시점과 그간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옮겨 갈 당시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그물건들을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물건들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4.10.11. 94도1481).
- © O.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받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서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찢어서 폐지로 된 타인발행 명의의 약속어음 파지면을 이용 조합하여 어음의 외형을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으로서 그 행사의 목적이 있는 이상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6.1.27. 74도3442).
- © O. 대마취급자가 아닌 자가 절취한 대마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절도죄의 보호법익과는 다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 므로 절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절도죄에 포괄흡수된다고 할 수 없고 절도죄 외에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절도죄와 무허가대마소지죄는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9.4.13. 98도 3619).
- ② X.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 및 금품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9.5. 94도3033).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500쪽

### 10.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임신중절의 목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킨 후 살해한 경우에는 낙태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된다.
- ②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③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과 과실범의 결합형태이고,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형법상 진정결과적 가 중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정답] ①

- [해설] ①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산부인과 의사인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 상태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염화칼륨 주입행위를 낙태를 완성하기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미숙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할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최소한의 의료행위도 없이 적극적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미숙아를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u>피고인에게는 미숙아를 살해하려는 범의가</u>인정된다(대법원 2005.4.15. 2003도2780).
- ②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

- 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합체).
- ③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상 진정 부작위범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 반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④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고의와 과실의 결합으로 미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수설이나 유력설은 법조문을 근거로 인정한다. 즉 인질치사상 죄, 강도치사상죄, 해상강도강간치사상죄의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미 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으로 특수강간, 친족 강간, 장애인 강간에 의한 치사상의 경우도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다.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413쪽

### 11. 다음은 사기의 죄에 관한 판례이다. 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은?

- ①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더라 도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형사상 사기 죄에 해당하다.
- ② 실제 주택사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도 수분양자가 아니면서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 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을 경우에는, 대출 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 하게 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 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채권을 전부 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에이르렀다 할 것이다.

#### [정답] ④

- [해설] ④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 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한 경우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위 원리금을 은 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의 기수미수를 논하는 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대법원 1977.1.11. 76도3700).
- ①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 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u>차용 당시</u>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 었다고 볼 수 없다.
- □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관광버스를 구입하여 그 운행수입으로 자신의 채무도 변제해 나가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차용금을 3년에 걸쳐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관광버스를 구입하여운행하면서 노력하였으나 결국 운행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2. 14. 2007 도 10770).
- ② 위 신용보증기금에 따른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사실은 주택사

업자로부터 주택을 분양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분양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기금의 관리기관을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당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u>기금 관리기관의 직원이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11.10. 2005도6026).</u>

- ③ <u>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u> 매수인이 제3자 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658).
- 자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 만큼, 설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출금 및 매매대금을 정산해 줄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658).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548쪽

### 12.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 은?

- ① 자기와 무관한 타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자구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다.
- ②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는 일반적, 보충적 위법성 조각사유로 기능하고 있다.
- ③ 부작위에 의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 ④ 형법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정답] ④

- [해설] ④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u>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u> 한 벌하지 아니한 다. ① 제23조 (자구행위)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 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②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u>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u>는 벌하지 아니한다.
- ③ 제21조 (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 다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179쪽

# 13. 다음 기술 중 횡령죄(업무상횡령죄 포함)가 성립하지 <u>않는</u>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을 틈을 타서 어업권손실 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 활비 등에 소비한 경우
-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였는데, 회사에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 ③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에 의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가 그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④ 乙이 甲으로부터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고 어음에 배서양도 받아 이를 다시 丙에게 배서양도 하였는데 지급기일에 부도가 되어 丙으로 부터 어음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다시 甲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

은 다음 어음회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경우 乙의 죄 채

#### [정답] ②

- [해설] ②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실제로는 타인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자금을 빌려 자기의 계산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도 제3자 명의를 차용한 경우, 이는 상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신주인수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회사가 제3자 명의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효력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 차용원리금의 상환의무는 회사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회사의자금을 인출하여 위 차용원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2.18. 2002도2822).
- ①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8.24. 93도1578).
- □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어업면허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공소외 김월분에게 양도하였고 위 김월분은 다시 피해자 설창진에게 양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으며, 위 설창진이 사실상의 어업권자로서 그때부터 그 양식장을 소유관리하여 왔는데도 피고인이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화력발전소의 건설에 따른 어업권손실보상금 584,000,000원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8.24. 93도1578).
- ③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u>횡령죄가 성립</u>한다(대법원 2002.2.22. 2001도 6209).
- □ 강학상 계약명의신탁 중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안 경우라고 인정 하여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 단한 원심판결을 전제가 된 부동산 명의신탁관계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기한다.
- ④ 甲이 乙에게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면서 위 어음에 배서하여 주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배서하여 할인하였다가 위 어음이 부도가 되어 丙은 乙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였고 乙은 다시 甲에게 어음금의 상환을 요구한 경우, 甲이 乙에게 위 약속어음 회수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면, 甲으로서도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여야 그 발행인으로부터 어음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순한 채무의 변제라고만 할 수는 없고 乙은 甲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어음회수를 위하여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볼 것이므로 乙이 이 돈을 갑의 의사에 반하여 어음회수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비한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9.11.14. 89도968).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603쪽

# 14.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미필적의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모두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여야한다.
- ② 미필적 고의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시가 있어야 한다.
- ③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 고의나 사후 고의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뿐이다.
- ④ 관할 당국의 운전면허취소통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 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에 고의가 있었다 고 할 수 없다.

### [정답] ③

[해설] ③ 고의는 행위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며, 사전 고의나 사후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간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과 협의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사장에게그러한 청소 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

<u>인하는</u> 내심의 <u>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u>(대법원 2004.5.14. 2004도74).

- □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②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 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u>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2.26. 2007도1214).</u>
- ④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3.23. 92도3045).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77쪽

### 15. 판례 의할 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u>않는</u> 것은 몇 개인가?

- ①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의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한 경우(선박파괴죄)
- ① 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매몰 순간 사람이 선박을 떠난 경우(선박매몰죄의 기수범)
- © 입찰장소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입찰방해죄)
- ② 경찰서 조사계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시 위하여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 경우(공용서류손상죄)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 [정답] ①

-[해설] ① ( )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⑦의 1개이다.

- ① X. 총 길이 338m, 갑판 높이 28.9m, 총 톤수 146,848톤, 유류탱크 13 개, 평형수탱크 4개인 대형 유조선의 유류탱크 일부에 구멍이 생기고 선수마스트, 위성통신 안테나, 항해등 등이 파손된 정도에 불과한 것은 형법 제187조에 정한 선박의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4.23. 2008도11921).
- □ 형법이 제187조를 교통방해의 죄 중 하나로서 그 법정형을 높게 정하는 한편 미수, 예비·음모까지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에 덧붙여 '파괴' 외에 다른 구성요건 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행위가 일반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손괴를 수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사정등을 고려해 볼 때,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파괴'란 다른 구성요건행위인 전복, 매몰, 추락 등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고통기관으로서의 기능·용법의 전부나 일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파손을 의미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손괴는 포함되지 않는다.
- © O. 선박매몰좌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이를 매몰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현존하는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다는 등 공공의 위험에 대한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 대해 매몰해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그로 인하여 선박을 매몰시켰다면 매몰의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하더라도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보아야할 것이지 이를 미수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6.23. 99도4688).
- © O.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며, 위력의 사용은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러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2.23. 92도3395).
- ② O. 경찰서 보안과장인 피고인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주기 위하여 그에 대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리고, 부하로 하여금 일련 번호가 동일한 가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 乙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케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처리부에 ∠에 대한 음주운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이상, ∠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의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6.10.11. 95도1706).
- ☞ 공용서류손상·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의 실체적 경합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717쪽

# 16.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 (판례에 의함)

- ①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하여 도, 형법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②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영사에게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그 알선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 ③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 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④ 미국 국적의 甲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A호텔에서 한국인인 乙, 丙, 丁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홍콩으로 건너가 홍콩인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경우, 甲이 필로폰을 매수한 행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없다.

#### [정답] ④

- [해설] ④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 국외에서 국외로 운반중인 히로뽕이 경유지인 국내 공항에서 환적을 위하여 항공사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지상반출된 경우, 히로 뽕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발생의 위험성이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에 해당한다. <u>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약</u>한다(대법원 1998.11.27. 98도2734).
- ①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국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 하여도, 형법 제3조에 따라, 필리핀국에서 도박을 한 피고인에게 우리 나라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대법원 2001.9.25. 99도3337).
- ②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u>비록 금품수수의 명목</u> 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

- 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인 (구)변호사법(2000.1.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4.21. 99도3403).
- ③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 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대법원 2008.12.11. 2008도3656).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42쪽

# 17. 공무원이자 국립병원 의사인 피고인이 甲의 부탁을 받고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아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및 판례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 ① 형법 제 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② 형법 제 227조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 ③ 위 두 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④ 위 두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정답] ②

- [해설] ②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9. 2003도7762).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757쪽

## 18. 착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u>않은</u>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생존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 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3명과 싸우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 려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 람이라 하여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상해의 의사로 칼로 찔렀으나 뜻밖에도 피해자가 죽은 경 우에 착오이론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라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정답] ④

- [해설] ④ 영아살해죄에서 "치욕은폐 등"의 동기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가 아니라 특별한 책임표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가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主觀的 表象)"에 의하여 해결 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라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해죄로 처벌 된다. 반대로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친생아로 오인라고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 ①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므로 과실범이 성립하나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
- ② 甲이 乙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피해자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상해의 범의가 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다(대법원 1987.10.26. 87도1745).
- ③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387쪽

### 19. 공무집행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포함)가 성립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수고 소란을 피운 경우
-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ℂ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는 경우
- ① 1개 ② 2개 ③ 3개

### [정답] ②

- [해설] ②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죄 포함)가 성립하는 것은 □□의 2개이다.
- ③ ○.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바,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 □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 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대법원 1981.3.24. 81도326).
- O.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조합관계자들과 사용자측 사이의 다툼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지시에따르지 않자 경비실 밖으로 나와 회사의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파악하기 위해 대기 또는 준비 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4.12. 2000도3485).
- © X.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 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 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 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 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 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만,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단순 히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로써 위 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고, 수용자가 아 닌 자가 교도관의 검사 또는 감시를 피하여 금지물품을 교도소 내로 반입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도관에게 교도소 등의 출입자와 반 출·입 물품을 단속, 검사하거나 수용자의 거실 또는 신체 등을 검사하 여 금지물품 등을 회수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이상, 그러한 수용자 아닌 자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 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교도관이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도와주었더라도, 이를 다른 교도관 등에 대한 관계 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3.11.13. 2001도7045).
- ② X.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3.9. 71도186).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848쪽

# 20. 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범죄행위를 한 법인의 직원이 자수하면, 그 자수감경의 효과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법인에게도 미친다.
- ② 법인의 직원이 범한 범죄가 친고죄라면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을 고소하는 이외에 법

인에 대한 별도의 고소가 요구된다.

- ③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 도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④ 종업원이 무허가 유홍주점 영업을 할 당시 식품 영업주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정답] ④

- [해설] ④ 종업원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u>식품영업주가 교통</u> 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920).
- □ 식품위생법 제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74조 내지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으로서 식품영업주의 그 종업원 등에 대한 감독태만을 처벌하려는 규정인바(대법원 1977.5.24. 77도412), 피고인의 종업원인 공소외인이 이 사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할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양벌규정에 따른 식품영업주로서의 감독태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식품영업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7.11.29. 2007도7920).
- ①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 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5. 95도391).
- ②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도 없는바, 저작권법 제103조의 양벌규정은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조항 없이 그 업무의 주체 등을 당연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으로서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위자의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하여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3.12, 94도2423).
- ③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u>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u>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10.10, 82도2595 권합체).
- ☞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66쪽

### 2012년 2차대비 형법심화문제특강 형법심화문제때려잡기특강

2012년 6월 대개강

- 1. 2012년 2차시험의 심화문제 완벽대비!
- 2. 총론2회, 각론2회 진도별문제풀이!!! 그리
- 고 종합문제풀이 1회(총5회)
- 3. 심화문제를 풀면 형법문제가 보이고, 고득

점이 보이고 합격이 보인다!

4. 판례를 공부해서 문제에 적용 시키고 순발 력을 키워야 합니다!

### 2012년 2차대비 형법심화문제특강 형법심화문제때려잡기특강

2012년 6월 대개강

- 1. 2012년 2차시험의 심화문제 완벽대비!
- 2. 총론2회, 각론2회 진도별문제풀이!!! 그리
- 고 종합문제풀이 1회(총5회)
- 심화문제를 풀면 형법문제가 보이고, 고득점이 보이고 합격이 보인다!
- 4. 판례를 공부해서 문제에 적용 시키고 순발력을 키워야 합니다!

# 2012년 2차시험대비 형법총정리마무리특강 형법조문-형법이론 및 학설-핵심판례

2012년 7월 예정

- 1. 형법 법조문 완전정복!
- 2. 형법이론 및 학설 마무리정리!!
- 3. 출제가능 핵심판례 요약정리!
- 4. 2011년 최신판례 완벽정리!
- 5. 형법 쪽집게 암기사항 마무리!

### \*\*\* 윤황채 형사법 수험서 \*\*\*

- 1. 형법총론, 형법각론[도서출판 예응 2011. 제5판]
- 2. PASS 핵심 경찰형법[도서출판 배움 2011. 제7판]
- 3. 형법, 형소법용어해설집[도서출판 배움 2011. 초판]
- 4. PASS 심화형법[총론,각론][국민고시각 2010. 개정판]
- 5. 형법조문과 판례[도서출판 예응 2010. 초판]
- 6. 객관식 판례형법[총론,각론][도서출판 배움 2012. 제3판]
- 7. 법1 검2 경3 핵심형법[도서출판 배움 2010. 제3판]
- 8. 법1 검2 경3 형법강의노트[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 9. 경찰검찰법원 형법판례때려잡기![도서출판 배움 2011. 제3판]

### 특강문의는

서울 국가경찰학원 02-6272-0022

인천 국가경찰학원 032-277-0055

#### 카페

http://cafe.naver.com/gosicore.cafe

http://cafe.daum.net/new-police

http://cafe.daum.net/SungjinAcademy

gosicore@naver.com

### 윤황채 형법고득점 7단계공부전략

1단계 : 교과서 공부(P&99 핵심형법)

1순환 : 기초 법률용어공부(형법적응하기)

 2순환 : 형법 기본학습(형법내용보기)

 3순환 : 형법 심화학습(형법깊이보기)

2단계: 기초형법 문제풀이(기본문제)

**3단계 : 판례공부**(판례때격%기)

4단계 : 학설-이론-법조문 심화학습(형법총정시)

5단계 : 형법기출문제풀이

1순환: 경찰기출문제(순경,경찰간부,경찰승진)

2순환: 기타기출문제(검찰직,법원직,법원고시,사법시험)

6단계: 형법기출지문정리(기출지문OX정리)

7단계 : All Pass 형법문제풀이 1순환 : 진도별 문제풀이(6회)

**2순환 : 심화문제풀이**(총론1회, 각론1회)

**3순환 : 종합문제풀이**(1회)

윤! 형법 정답									
1	1	2	1	3	1	4	1	5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6	1	7	1	8	1	9	1	10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11	1	12	1	13	1	14	1	15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16	1	17	1	18	1	19	1	20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